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 요건 확대〉

■ 신영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470호)

2025.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3

I. 개요

1. 신영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47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신영대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5. 1. 13.

(3) 회 부 일 : 2025. 1. 1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면서, 활동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활동지원인력의 기피 현상으로 활동지원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가족에게 돌봄 부담이 전가되어 가정의 경제활동 및 생계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가족 간 활동지원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함으

로써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자 함(안 제30조제3항 단서).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지원급여 수행 요건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30조(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등) ①·② (생략)	제30조(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 법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u>활동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 ----- ----- ----- ----- ----- -----다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
<신 설>	1. <u>활동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경우</u>
<신 설>	2. <u>수급자가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중증장애인으로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u>

현행	개정안
<신설>	<u>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u> 3.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u>

2. 검토의견

□ 현행법령에서는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① 수급자가 섬, 외딴 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②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수급자가 감염병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④ 수급자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2024년 11월 1일 ~ 2026년 10월 31일까지 한정)에는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50%를 감액 지급하고 있음.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등)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 법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활동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자가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급자가 섬, 외딴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수급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4. 수급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종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기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 ②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수급자가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제33조(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의 가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 혈족의 배우자
3.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 개정안은 이 같은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 요건으로 수급자가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중증장애인인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가족이 활동지원인력으로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최근 활동지원서비스 6개월 이상 미이용자(2,782명 응답)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미이용 이유로 ‘활동지원사 미연계’가 약 36%, 가족돌봄이 약 17%로 나타났다는 점¹⁾(참고자료 1: 2024년 활동지원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조사 결과),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산수당(시간당 3,000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1) 보건복지부 제출

업무 강도에 비해 금액이 작아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²⁾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최종증의 장애인 등이 가족으로부터 안정적·지속적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참고로, 활동지원급여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가족에 의한 재가급여 제공을 허용하고 있음.³⁾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도입 취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인데, 개정안의 조치는 오히려 가족에 의한 돌봄을 확대·유도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음.⁴⁾

둘째,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와 활동지원인력 간 1:1 방식으로 제공되는데,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이 확대될 경우 서비스 질 저하 및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셋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그동안 수급자격이 있었으나 활동지

2) 국회입법조사처. (2024). 국정감사 이슈분석 X.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에 따르면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재가급여는 1일 60분의 범위 내에서 매월 최대 20일까지 인정하고 있으며, 수급자가 폭력 성향이 있거나 치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급여를 이용하지 않았던 장애인의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024년 12월 기준, 전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는 160,343명, 이용자는 127,373명, 이용률은 약 79.4%로 보건복지부는 가족 간 급여 확대 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최대 약 3만 명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임.

넷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현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로 “수급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종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모니터링 과정을 거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전반적인 제도 설계를 논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가족급여 시행상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가족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 제한적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사전연구」(보건사회연구원, ‘24.12~’25.4.)를 수행 중에 있음.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장애인활동지원은 사회적 서비스로 타인인 지원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원칙, 인력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의 한계 보완,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가족급여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으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장애인 당사자 자립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로서의 취지, 전면 허용 시 가족 돌봄으로의 유도·회귀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함.

- 따라서 「장애인활동법시행령」 제21조제4호 신설을 통해 한시적('24.11. ~ '26.10.)으로 시행 중인 가족급여 모니터링을 거친 이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2024년 활동지원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조사 결과>

☐ 조사응답 : 총 3,387명 중 2,782명 응답 (82.13%)

☐ 조사응답자 중 현재 활동지원급여 이용 여부

(단위 : 명, %)

현재 활동지원급여 이용 여부	대상자수	비율
계	2,782	(100)
이용	274	(9.85)
미이용	2,508	(90.15)

☐ 미이용 사유 조사 (조사응답자 중 미이용 응답자 총 2,508명 대상)

○ 미이용 사유(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정리)

(단위 : 명, %)

미이용 사유	대상자수	비율
계	2,508	(100)
활동지원사 미연계	900	(35.89)
가족돌봄	418	(16.67)
병원 60일 초과 입원	302	(12.04)
시설 입소	132	(5.26)
유사서비스 수급	130	(5.18)
타인기피	117	(4.67)
향후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신청	106	(4.23)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불만족	81	(3.23)
서비스 이용 준비 중	60	(2.39)
본인부담금 부담	38	(1.52)
사망	35	(1.40)
건강상태 호전	27	(1.08)
서비스 시간 부족	14	(0.56)
60일 이상 국외체류	12	(0.48)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 입소	10	(0.40)
서비스 종류 부족	8	(0.32)
기타	118	(4.70)

○ 활동지원사 미연계 세부 현황

(단위 : 명, %)

활동지원사 미연계 사유	대상자수	비율
계	900	(100)
필요한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할 활동지원사 부족	260	(28.89)
필요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할 활동지원사 부족	189	(21.00)
수급자 특성*으로 인한 활동지원사의 기피	179	(19.89)
부족한 급여량에 따른 활동지원사의 기피	126	(14.00)
장거리로 인한 활동지원사의 기피	65	(7.22)
원하는 성별의 활동지원사 부족	33	(3.67)
기타	48	(5.33)

* 발달장애인으로 공격성, 폭력성 등 행동장애가 심한 경우 또는 와상, 사지마비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현저한 곤란이 있는 경우

○ 유사서비스 수급사유 세부유형

(단위 : 명, %)

유사서비스 수급 사유	대상자수	비율
계	130	(100)
노인장기요양	86	(66.15)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6	(4.62)
노인돌봄서비스	4	(3.08)
가사간병방문서비스	2	(1.54)
기타 재가서비스	32	(24.62)

○ 주 돌봄자 현황

(단위 : 명, %)

주 돌봄자 현황	대상자수	비율
계	2,508	(100)
직계혈족	1,519	(60.57)
돌봄자 없음	459	(18.30)
배우자	170	(6.78)
형제 자매	137	(5.46)
배우자의 형제 자매	5	(0.20)
배우자의 직계혈족	2	(0.08)
직계혈족의 배우자	1	(0.04)
기타	215	(8.57)

자료: 보건복지부